

# 國際海事機構 第14次 總會

許 龍 範\*

## The 14 th IMO Assembly

Huh Yong Bum

### 〈 目 次 〉

- |                          |                            |
|--------------------------|----------------------------|
| 1. 會議 開催, 構成             | (2) 해상안전에 관한 MSC 의 권고문의 채택 |
| (1) 명칭, 일시등              |                            |
| (2) 회의 참가국 및 국제기구등       | 4. 參加所見                    |
| 2. 議 題                   | (1) 총회의 동향                 |
| 3. 主要議題                  | (2) 앞으로의 과제                |
| (1) 海上安全委員會(MSC) 보고서의 심의 |                            |

周知하는 바와 같이 IMO 는 Organization Convention 제14조에 따라 2년에 한번씩의 定期總會를 開催하고 있다. 筆者는 1985년 11월 12일부터 22일까지 런던에 있는 IMO 본부에서 열린 제14차 정기총회에 參席하였든바, 때늦은 감은 있으나, 본 지면을 빌어 개략적인 내용이나마 소개할 수 있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 첨언하건데 이하에 적는 사람들은 이미 제14차 정기총회 참석 공식보고서에 수록된 내용中 중요한 부분만을 요약 발췌한 것이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그 보고서를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 1. 회의 개최, 구성

#### (1) 명칭, 일시등

- 1) 회의 명칭 : IMO 제14차 정기총회
- 2) 일시 : 1985년 11월 11일~1985년 11월 22일
- 3) 장소 : IMO 본부(런던所在)
- 4) 의장단 구성  
본회의 의장 : Mr. O. Soares Carbonar(주영 브라질 대사)  
본회의 제 1 부의장 : Mr. N. Naeem Beg(파키스탄 해군소장)

\* 韓國海技研修院

본회의 제 2 부의장 : Mr. P.N. Meghii(탄자니아 대표)

(2) 회의 참가국 및 국제기구등

가. 참 가 국 : 1985. 7. 31. 현재 IMO 회원국 127 개국 중에 116 개국과 준회원 홍콩 그리고 옵저버 자격으로 북한, 아프가니스탄, 차드가 參席함.

나. 국제기구 : UN, UNCTAD, UNDP, ILO, WMO.

다. 정부간 기구(옵저버) : IHO, EEC, OAU, 아랍연맹, ISCOS, IOPC, FUND, INMARSAT, MINCONMAR.

라. 비정부간 기구 : ICS, ISO, ICC, ICFTU, IALA, CIRM, CMI, IAPA, IACS, ICHCA, CEFIC, LASA, OCIMF, IMPA, IAIN, BIPAR, IFSMA, ILAMA, INTE RTANKO, ITOFF, ILC.

## 2. 議 題

今次 定期總會의 會期中에 다룬 議題들은 아래에 있는 바와 같이 모두 36個가 있었으며 以前까지의 定期總會때마다 다루었던 事項들과 比較해 볼때에 議題의 順序라든가 節次상 必要로 하는 內容들은 同一하다.

아래의 議題들 중에서 國際協約에 關한 內容을 다룸으로써 우리나라에게 實質적으로 影響을 미칠수도 있는 것들은, 13次 정기총회이래 2년간 MSC, MEPC, LEGAL COMMITTEE,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FACILITATION COMMITTEE 등의 5個 위원회에서 연구 검토되어 총회에 제출된 의제번호 10(a), (b), 11, 12, 13, 14 등이 해당 될 것이다. 이 내용중에 총회기간동안에 결정된 거의 모든 Resolution 이 포함되어 있다.

총회는 本 會議(Plenary)와 2개의 分科委員會(Committee)로써 構成되는데 專門性이 강한 內容들을 다룰때는 第1分科委員會(행정, 재무, 법률위원회) 및 第2分科委員會(Technical Committee)로 나누어 아래의 표에 표시된 內容들을 審議한뒤 最終적으로 本 會議에서 採擇하였다.

회 의 의 제

I : 第1分科委員會(行政, 財務, 法律委員會)  
 II : 第2分科委員會(技術委員會)

의제번호	의	제	관	할
1	의제선택.		본회의	
2	총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	
3	IMO 기구 협약 제56조의 적용(분담금의 연체)		"	
4(a)	신임장 위원회의 설치		"	
(b)	분과위원회의 설치		"	
5(a)	신임장 위원회 보고서의 심의		"	
(b)	분과위원회 보고서의 심의		"	
6	IMO 기구 협약의 수락 및 그에 따른 회원국 변동 상황		"	
7	IMO가 권장하는 협약 및 다국간 문서의 현황		"	
8	제13차 총회 이후의 기구 업무 결과에 관한 이사회의 보고		"	
9	諸協約 및 다자간 문서의 시행경과 보고		I, II	
10(a)	해상안전위원회 보고서의 심의		II	
(b)	해상안전에 관한 권고문의 채택		II	
11	법률위원회 보고서의 심의		I	
12	해양 환경보호 위원회 보고서 심의		II	
13	기술협력 위원회 보고서의 심의		I	
14	간소화 위원회 보고서의 심의		I	
15	1972년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협약(이에 관한 사무국의 지능수행에 관한 보고)		II	
16	"특정 물질의 해상운송과 관련한 손상에 대한 책임 및 변상에 대한 국제회의"의 보고서		본회의	
17	기구 본부의 시설 및 거주 설비		I	
18(a)	세계 해사 대학 운영 경과 보고		본회의	
(b)	세계 해사 대학과 기구간 작업반의 보고		"	
(c)	세계 해사 대학 현장 개정		"	
19	분담금 연체(운전자본 기금)		II	
20	회계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I	
21	기구 재무규정의 개정		I	
22	기구의 장기업무 계획		I, II	

23	第14차 회계년도(1986—1987)의 업무계획 및 예산	I
24	UN 및 전문 기구와의 관계	I, II
25	합동 조사단	I
26	정부간 기구와의 관계(협력협정안)	I, II
27	비 정부간 기구와의 관계	본회의
(a)	자문자격의 신청	I, II
(b)	비 정부간 기구의 자문자격 재심사	"
(c)	비 정부간 기구와의 관계 적용규칙의 개정	"
28	이사국 선출(기구협약 16, 17조 적용)	본회의
29	기구 직원 연금 위원회 회원 선출	"
30	총회 의사 절차 규칙의 개정	"
31	출판 및 공지사항	"
32	1984/85 세계 해운의 날	"
33	국제해사상	"
34	사무국장의 재선	"
35	제15차 총회 개최지 및 일자의 결정	"
36	추가 보충 의제	"

### 3. 主要議題

여기에서는 紙面이 한정된 관계로 모든 의제의 상세한 내용은 적을수가 없으며 앞에서 언급했듯이 第1分科委員會("Committee I"으로서 의제번호 9, 11, 13, 14, 17, 19—27의 행정 재무 법률에 관한 의제를 심의함)와 第2分科委員會("Committee II"로서 의제번호 9, 10, 12, 15, 22, 24, 26, 27의 MSC, MEPC에 관한 내용을 심의함)에서 상세한 심의를 한 내용들중에 第2分科委員會가 심의한 내용의 일부인 MSC 관련사항만을 위주로 소개하겠다. 각 의제에 대한 자세한 해설등은 참석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 (1) 海上安全委員會(MSC) 보고서의 심의

의제번호 10(a)로서 Committee II (Technical Committee)가 MSC의 최근 2년간의 업무를 보고 받고 이에 대한 심의후 승인, 채택등을 한 내용임.

- 1) 제50차 MSC 회의에서 "1977년 Torremelinos 협약"에 대한 회원국의 비준을 촉구함.
- 2) BCH와 IBC Code의 개정안을 승인(채택은 추후 소정의 절차에 의함)하고 "Code for

Existing ships carrying Liquefied Gases in Bulk”의 제 4 차 개정을 채택함.

3) MEPC에서 오염문제를 해결키 위하여 MARPOL 73/78의 Annex-Ⅱ와 IBC 및 BCH Code 를 일부 개정하려는 작업에 동의함.

4) IMDG Code 를 통하여 MARPOL 73/78 Annex-Ⅲ의 규정들을 시행토록 하자는 MEPC 의 제안을 제52차 MSC 에서 다루도록 연기하고, 포장된 형태의 위해물질 운송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키 위하여는 IMDG Code 의 개정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위험화물 운송소 위원회는 MEPC 의 지도하에 이와 관련한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함.

5) 제49차 MSC에서 제 2 세대 INMARSAT 우주분할에 406MHz EPIRB Transponder 를 포함시키자는 의견에 관심을 갖고 제52차 이사회에서는 INMARST 로 하여금 본건에 요하는 비용추정을 요구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총 비용추정액, 실용효과, 상세한 시운전결과가 아직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현실점에서는 본건에 지지할 수 없다고 결론을 지음.

6) INMARSAT 회원국들은 EPIRB 서비스를 L-band 또는 406MHz에서 FGMDSS 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해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7) MSC 50 차 회의에서는 draft “Transition plan for the FGMDSS”을 승인하고 FGMDSS 의 도입을 위한 evaluation, exemption, equivalents, equipment test 지침이 완성되는 대로 본건을 재고하기로 함.

8) MSC 51 차에서는 9 GHz radar transponder 가 float-free EPIRB 및 Survival craft 수색용의 주요 수단으로 되어야 한다는 통신소위의 의견을 이서함.

9) MSC 는 “1987년 선박이동국을 위한 세계무선 주관청회의”의 준비와 관련하여 “CCIR study group-8”의 최종회의와 ITU 에게 권고안 등을 제출할 것에 동의함.

#### 10) IMO/ICAO 양해각서

MSC 는 helicopter operation 에 대한 양기구의 책임한제를 IMO/ICAO 양해각서에 의하여 명확히 해줄것을 요청하는 선박의장 설비 소유의 제안을 승인하고 동 소위로 하여금 ICAO 의 의견을 고려하여 적합한 권고문을 작성토록 요청함.

11) MSC 제50차 회의에서 SOLAS 및 LLC 개정을 위한 국제회의를 1986년에 개최기로 제안되었으나 이것은 MSC 51 차 회의에서 다시 1988년으로 연기토록 결정함.

이와 아울러 1988년 회의시 “Harmonized System of survey and certification”과 FGMDSS 에 관한 규정도 함께 도입할 것을 결정함.

#### 12) Single technical Convention.

총회 결의문 A. 554 (13) 장기 업무 계획에 포함되어있던 것과 같이 IMO 의 기술적인 문제에 관한 여러개의 협약들을 통합시켜 한개의 협약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따른 난점이 많고, 아직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Working group 을 결성하기에

는 시기상조이므로 회원국들은 이에 관한 의견들을 MSC 52차 회의에 제출해 주도록 요청함.

13) 선박식별 번호

제49차 MSC에서 제안되어 50차에서 동의된 것으로서 선박의 법적인 문제, 안전 및 오염방지 강화를 위하여는 한척의 선박이 건조된뒤 선주의 변경, 선적의 변경, 선급변경 등에 관계없이 폐선될 때까지 변하지 않는 그 선박의 고유의 번호를 IMO의 차원에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데로 결론지워짐. 이때 사용될 번호는 Lloyd's 선명번호를 사용할 것을 Working group이 권고하였음.

14) Sea piracy and armed robbery

제49차 MSC에서 Sea piracy와 armed robbery에 관한 회원국의 사고보고서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이러한 행위의 방지를 위한 법제적 또는 지역적 세미나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IMO의 전문가들이 싱가포르에서 이러한 준비를 하기 위한 자금을 미국이 원조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시함.

15) 제 협약들의 tonnage parameter 대체.

총회 결의문 A.494(XII)의 요청에 따라 IMO의 제협약에 있는 선박의 tonnage parameter를 대체하는 문제에 대한 IMO의 심의 결과에 의하면 이는 더욱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으므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데에 동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MSC 50/27. Annex 2에 기술함.

16) 기타 사항들

① 증서의 번역

리비아의 항구를 입항하는 선박은 선박의 각종 증서를 아랍어로 번역해서 소지할 것을 요구하는 리비아의 요청을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키 위한 결의안을 작성함.

② 1981~1983 사이에 419건의 중대 해난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해난사고 당사국들은 이에 관한 보고(경위 및 조사보고)를 MSC/circ 395의 양식에 의해 사무국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③ 해난사고 통계 운영반의 통계를 보고받고 원양 탱커선의 중대 해난사고 분석은 2~3년 간격으로 출판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함.

④ MSC는 1983. 1.~1984. 6. 사이에 SOLAS 및 LLC에 관한 선박의 결함보고서를 당사국들로부터 468건 접수하고 본 보고서의 양식을 MSC/circ 396으로 변경함.

※ 上記의 16種의 사항들외에 MSC에서 그간 채택된 뒤 총회에 보고만을 하게 되어있는 각종 Guideline 및 Recommendation(이의 상세한 내용들은 이미 회원국들에게 MSC circular로 송부되었음)이 28가지가 있었으나 이것은 생략한다.

(2) 해상안전에 관한 MSC의 권고문의 채택

총회 의제번호 10(b)의 내용으로서, MSC의 제49, 50, 51차 회의에서 작성되어 총회의 결의문으로 채택토록 제14차 총회에 문서번호 A.14/10(b)로 권고된 문안들을 제Ⅱ분과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채택한 사항들임.

모두 25개의 제목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지면제한으로 다 소개할 수 없으며 항해와 관련된 중요 내용들만 몇가지 개략적인 소개를 하겠다.

1) Use of the Cospas-Sarsat Low Polar Orbiting Satellite EPIRB System.

Cospas-Sarsat는 현재 소련이 3개 위성(COSMOS-1383, COSMOS-1447, COSMOS-1574), 미국이 1개 위성(NOAA-8), 6개의 국내 위임 조정본부와 10개의 지방 이용자 단말(LUT: Local User's Terminal로서 미국이 3국, 소련 3국, 캐나다 1국, 프랑스 1국, 노르웨이 1국, 영국 1국)로 구성된 위성 System이며 EPIRB의 위치 확인 시험결과 406MHz EPIRB에서는 2~3마일 이내, 121.5MHz에서는 10마일 이내의 오차로 정도 높은 수색 및 구조용 위성으로 사용될 수 있음이 판정되어 이를 FGMDSS의 일부로 구성키 위한 회원국들의 평가 시험을 촉구하는 내용임. (MSC 50/27 Annex. 4. 참조)

2) General Requirements for shipborne radio equipments forming Part of the future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1990년대의 FGMDSS의 일부로 사용될 선박용 통신기기들의 일반적인 성능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installation, operation, Power supply, Durability and Resistance to environmental conditions, Safety precautions, maintenance, marking and Identification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음.

3) Type approval of S. E. S. (Ship Earth Stations)

INMARSAT의 선박지구국 장비의 제조후 이의 형식승인을 회원국이 할때에 기술적인 면에 관한 INMARSAT로 하여금 제조자가 자국의 추가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제조자를 독려하고 그러한 사실을 증명해 줄 것을 요청한 내용임.

아국에서는 체신부의 "INMARSAT 선박지구국 허가지침"에 의거 허가 및 검사실시 중임. 즉 형식검정은 INMARSAT의 형식승인으로, 무선국 허가검사는 INMARSAT의 COMMISSIONING TEST로써 같음하고 있음. (MSC 50/27 Annex. 9참조)

4) Recommendation on general requirements for electronic navigational aids.

제8차 총회의 결의문 A.281(VII)를 대체시키기 위한 새로운 결의문으로서 위위 "2)"항에서와 같이 전파항해 설비의 일반적 성능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MSC 50/27 Annex 10참조)

5) Regional Hydrographic Commissions and Regional charting groups.

8 韓國航海學會誌 第10卷 第1號, 1986

제 6 차 총회의 결의문 A. 419(XI)에 의하여 “World-wide Navigational Warning Services”가 채택되고, Res. A. 532(13)에 의하여 새로운 수로정보를 수로당국들이 서로 신속히 교환하여 수로관련 기술을 협력토록 결의한 바 있음. 이 결의문에는 이에 대한 보완적 발전적인 내용이 담겨있으며 IMO 가 지역수로 책임반(Regional Hydrographic Commissions) 또는 지역해도 제작진(Regional charting groups)을 만들기로 한것에 따라 회원국들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음. (MSC 50/27 Annex. 12 참조)

6) Guidelines for VTS(Vessel Traffic Services)

Res. A. 158(ES. IV)의 “Port advisory service”와 Res. A. 531(13)의 “General principle for ship reporting system”과 관련.

각 VTS 지역마다 그 절차의 상이성으로 선장들의 혼돈이 우려되며 국제적으로 승인된 절차를 수립하여 이를 방지코자 마련된 결의문임. (MSC 51/21. Annex 8참조)

7) Guidelines on surveys required by the 1978 SOLAS Protocol, the international bulk chemical code and the international gas carrier code.

총회가 '78 SOLAS Protocol 에 따라 선령 10년 이상의 탱커의 중간검사 뿐만 아니라 모든 화물선의 Mandatory Annual Survey, Unscheduled Inspection 지침을 총회 결의문 A. 413(XI)으로 채택후 A. 465(XII)으로 개정한 적이 있고 그 후 이 지침서의 개선작업을 MSC에 위임한 바 있음.

'78 SOLAS Protocol 에 따른 IGS에 관한 검사지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으며 MSC에서는 MSC. 4(48) 및 MSC. 5. (48)에 IBC 및 IGC code 를 채택한바 있음.

이에 따라 '78 SOLAS Protocol 및 IBC, IGC 상에서 요구되는 검사의 지침을 통합해서 작성할 필요가 생김으로써 A. 413(XI), A. 465(XII)에 대체할 새로운 지침서를 채택한 것임. (MSC 51/21 Annex 10참조)

8) Ship's Routeing.

총회는 A. 377(X)로 TSS(Traffic Separation Schem) 이외의 Routeing system 을 채택 또는 개정하는 절차를 정한 바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IMO 에서 새로히 정하거나 개정된 Routeing system 을 결의문으로 채택하는 내용임.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보고서 별첨 3에 있으며 북구의 “IJMUIDEN”진입항로와 “BERMUDA ISLANDS”의 항행금지 구역시설에 관한 내용임. (MSC. 51/21. Annex. 5 참조)

9) Draft amendment to regulation II-2/55. 5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amended.

'74 SOLAS, I /5 의 규정에서 equivalentents(동등물)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II-2/55. 5에서는 II-2/60에서 규정하는 IGS를 Chemical tanker 와 Gas carrier 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기로 하였음. 그에 따라 총회에서는 그후 A. 473(XII)에 의하여 석



유제품을 운송하는 Chemical tanker 에 별도로 적용할 IGS 관련 규정을 임시로 정한 바가 있음.

A. 473(XII)에서는 본 임시 규정의 Final requirement 에 포함될 추가 규정은 Final requirement 가 발효되기 이전에 용골이 놓인 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음.

그 결과 가연성 케미칼 제품을 수송하는 Chemical tanker 의 IGS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이러한 선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IGS설비없이 가연성 케미칼을 운송하게 되었음.

그리하여 14차 총회에서 새로히 채택할 결의문인 "Regulation for Inert gas system on chemical tanker"에 보조를 같이하여(이 결의문은 석유 및 케미칼 제품을 운송하는 케미칼 탱커의 IGS에 관한 규정 설치에 관한 것이므로)

'74 SOLAS II -2/55.5 를 개정하여 채택하도록 MSC에게 요청하는 결의문임.(MSC 51/21. Annex 11 참조.)

#### 4. 참가 소견

##### (1) 총회의 동향

1962. 4. 10. 우리 나라의 IMO 가입을 위한 수락서가 IMO에 기탁된 이래 IMO의 회원국이 된지 23년이 되었다.

금번 제14차 총회기간동안 참가국들의 각 의제에 대한 발언, 대처등을 중심으로 회원국들의 움직임을 볼 때에 다음과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즉 선진제국들은 MSC, MEPC, TC, FAL 중 회원국들의 해운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주요협약, 결의문등을 주로 기초, 제안하는 MSC, MEPC 산하 소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자국의 이익을 적극 반영시키는 등 실질적 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영어 또는 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중 과거 영국, 불란서의 식민지였던 후진국, 제3세계권의 국가들은 위의 선진국들과 같이 IMO에 구체적으로 참여하여 실질적인 자국의 이익을 반영시킬 인적, 기술적 능력은 부족하더라도 자국들의 해운관련 분야의 수준이 IMO 회원국들의 평균수준보다 훨씬 낮으므로 과거부터 있었던 영·불과의 유대관계, 언어소통등을 심분활용하여 IMO의 선진국들로부터 평균수준의 그러나 그들로서는 발전된 실질적인 기술원조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들 나름대로의 일차적인 소기의 목적은 달성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각 선진제국에서 자국들에게 유리하게 소위원회에서 초안을 한 각종 협약의 개정안, 결의안들에 대하여 자국은 당장 준수할 능력이 없더라도 일단은 거의 맹목적으로 찬성,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가장 애매한 상황에 처한 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중진국 대열에 있는 국가들이

다. 즉 우리나라의 국익을 반영시키기 위한 소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기에는 재정적, 인적 지원이 불충분하여 선진제국과 직접 상대하여 위에서 언급한 협약, 결의문들의 흐름을 실질적으로 바꾸기에는 역부족이고 기술적으로는 후진국, 제 3 세계권 국가들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IMO에 기여한 것 보다는 그 혜택을 덜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2) 앞으로의 과제

앞에서 총회의 동향에 관하여 나름대로 적어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대처해야 할 일은 현재 조직되어 있는 IMO 협약 연구회를 좀 더 활성화시켜 각 소위원회의 분야별로 전문가를 육성함과 동시에 장기 계획을立案해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다면 소기의 목적달성이 불가할 것이며 현재 IMO 협약 연구회의 대부분의 연구위원들은 현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해서 그에 따른 시간적인면, 능력면에서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가장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IMO 관계의 주요협약들은 거의 대부분이 기술적인 전문적 경향이 강하므로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몇 사람의 능력으로서 이를 모두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각 분야별로 세분된 전문가의 지속적인 지원, 육성이 IMO 관계에 대처하는 유일할 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학계에서도 우리나라의 이와같은 실정을 보아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